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6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위임 전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스포츠시설팀 ‘스포츠시설운영’ 항목 중 ‘(9)관리 시설에 부속된 의무실 관리’ 를
팀장 전결로 신설한다.
- 11. 특화사업팀에 ‘자치위원회’ 항목과 ‘(1)청소년자치위원회 구성’ 과 ‘(2)사업운영 및
간담회, 회의 진행’ 내용을 팀장 전결로 신설한다.
- 12. 청소년교육팀의 ‘전산관리’ 항목을 삭제하고, ‘스포츠시설운영’ 항목과
‘(1)관리 시설에 부속된 의무실 관리’ 내용을 팀장 전결로 신설한다.
- 14. 청소년문화의집의 ‘집행·품의’, ‘수입관리’ 항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